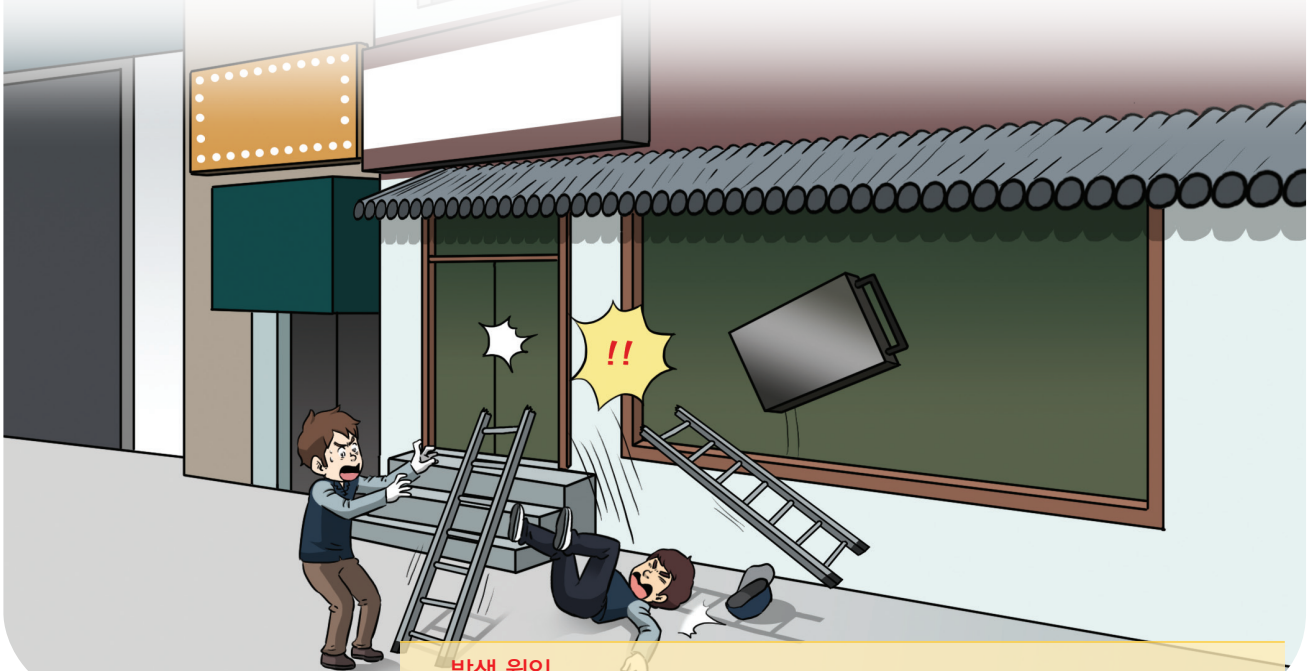




전광판 설치작업 중 사다리 파손으로 추락



사업장 외벽에 전광판을 부착하기 위해 2층 창문 아래턱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후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수직기둥 양쪽이 부러지면서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고소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 등 미사용
 - 이동목적의 이동식사다리(A형)을 이용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
-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

TIP

안전작업

1 안전한 작업대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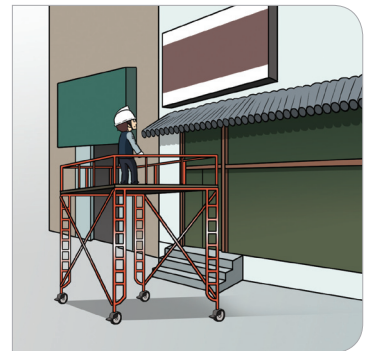
-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높이의 비계를 조립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

2 개인보호구 착용

-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,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한 후 작업 실시



고소작업대



이동식 비계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(추락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(이동식 비계)





전광판 설치작업 중 사다리 파손으로 추락

고소작업 시에는 안전한 작업대를 사용하세요!

